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2. . (제 회)	

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제 출 자	김명국 의원의 6명
제출 연월일	2020. 2. .

#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

의 안 번호	
-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0. 2. .

제 출 자 : 김명국 의원의외 6명

## 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해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, 주요내용,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고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제19조의2(조례안 예고) ⇒ 신설

## 3. 개정안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
- 나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
- 다. 예산관련사항 :
- 라. 성별 영향평가 결과 :
- 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
- 바. 기타 관련사항 :

##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

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2(조례안예고)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·주요 내용·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
-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의견제출자”라 한다)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-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.
-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19조의2(조례안예고)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·주요 내용·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의견제출자”라 한다)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</u></p> <p><u>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u>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의 회 사 무 과	
연 락 처	054-950-6408